

# 일본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 일본

가전업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갖가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적응하고 변신하는 궁정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근자의 흐름을 살펴볼 때 1993. 12 일본 경제개혁연구회 보고에서 안전 및 환경보전의 견지에서 행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자기책임을 중시하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내용으로 그칠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본전기 협회가 설치한 전기용품조사 위원회가 지난 '94. 7 "제3자 인증제도의 자세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후의 방향으로 정부의 법적인증방법에서 민간의 제3자에 의한 인증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술기준 및 표시방법의 국제화

를 더욱 촉진하여야 함을 지적하였고 이의 구체적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체계로의 전환방법으로

첫째로 전기용품은 원칙적으로 '을종'으로 한다.

둘째로 적합하고 적절한 기술거준은 IEC를 따른다.

셋째로 표시의 방법은 IEC 등급의 내용에 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단기적으로 위험도가 비교적 감소된 '갑종'전기용품에 대한 '을종'전기용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표시방법에 정합하는 관점에서 행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방향과 비전의 실현으로 '갑종'전기용품을 '95년도부터 점차 축소하여 5년정도의 기간내에 모두 폐지할 예정으로 1차로 지난 3월 31일자 정령으로 현재 갑종 전기용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

기변좌, 전기온장고 등 117품목을 '을종'전기용품으로 전환시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갑종'전기용품으로 전존케 되는 품목은 166품목만 남게 되었다.

이 조치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민간기관의 S(Safety)마크 인증 제도이다.

이 S마크제도는 종전의 일본 전기용품 취체법상의 '갑종'제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형식승인 마크와는 달리 '을종'제품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며 그 취득절차는 현행제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전기·전자업체들의 대일수출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이 아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PL법(제조물책임법)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법은 94년 7월 1일에 공포되어 1년후인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의 요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이 인정되는 제조사는 이에 합당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다.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해자인 소비자는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기술화된 대량생산 판매되는 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 제품을 통상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 추정의 법리는 미국과도 같다.

따라서 일본전자기기공업회와

가전제품협회(일본)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사용과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표시를 법정표시(전기용품취재법에 의한표시) 이외에 경고 표시를 별도로 하는 등 생산자가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가전제품협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시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전제품협회내에 “가전제품PL센터”를 설립하여 가전제품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분쟁해결의 일환으로 상대와의 교섭에 있어 공평성, 투명성을 기하고 재판진행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등 각종 문제에 실효를 높이고자 발족되었으며 그 인원은 상근 이외에 비상근으로 변호사, 기술자, 소비자

문제전문가, 조사원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 구성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 ①제품관련 사고에 관한 분쟁처리 ②제품의 안전성 결함에 관한 조회, 상담, 애로처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같이 제품안전에 관한 자기책임의 중시와 품질인증의 민간기관에로의 이관 흐름에 따라 모든것이 따라서 같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이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지난 '94년 9월 23일 행정쇄신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 정부입법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등 우리기업들도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제도에 미리알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 전기용품 취재법에 의한 표시와 단체의 표시를 결합한 표시의 예  
(TV의 고전압에 대한 주의)